

「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0월 2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04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1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0년 11월 04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교육체육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입사 제한사유 중 장애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 입사생 선발공고 내용을 명확화 하며 용어를 맞게 정리하고, 수시·정시합격생의 차별요인을 개선하고자 제출서류를 현실화 하고 선발시기를 조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장애차별적 요인 제거(안 제5조) : 신체장애 입사생 제한규정 삭제
  - 현행 : 신체·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
  - 변경 :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
- 신청서류 현실화(안 제6조 제1호) : 수시합격자 중 수능미응시자에  
대한 불이익 요소 제거

- 현행 : 성적증명서(신입생 :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, 재학생 : 직전학년 성적)
  - 변경 : 성적증명서(신입생 :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, 재학생 : 직전학년 성적)
- 선발시기 변경(안 제7조) : 정시 합격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(2월초⇒2월)
- 현행 : 향토학사 입사생은 매년 2월초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
  - 변경 : 향토학사 입사생은 매년 2월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
- 선발인원 조정(안 제8조) : 신입생 7, 재학생 13 ⇒ 20명 이내 조정
- 현행(안 제8조2호) : 신입생 7명, 재학생 13명 범위 안에서 선발
  - 신설(안 제8조3호) : 신입생 및 재학생의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
- \* 신입생 7명, 재학생 13명 범위 안에서 배정(원칙) ⇒ 원칙을 따르되 부득이한 경우 20명(남 10, 여 10) 이내에서 조정 가능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은
- 안 제5조에서는 입사생 제한규정을 신체·정신상에서 신체장애를 삭제  
 안 제6조에서는 수능미응시자를 위해 신청서류 상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 추가  
 안 제8조에서는 신입생, 재학생 선발인원 구분 배정을 통합 선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.
- 입사 제한에 신체장애 사유 삭제, 수시·정시합격생의 차별 시정 등

불합리하고 공평치 못한 요인을 제거하여  
본 조례안은 잘 정비하였다 판단됩니다.  
개정에 따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 관한조례”를 “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선발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장소, 방법”을 “신청장소, 신청방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인원, 방법”을 “선발인원, 선발방법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신체·정신상”을 “정신상 등”으로 한다.

1. 법정 전염병(결핵 등)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

제6조제1호 중 “신입생은”을 “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2월초”를 “2월”로 한다.

제8조 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입사생 선발 시, 신입생 및 재학생의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국민생활수급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입사생 선발공고) (생 략)</p> <p>1. 신청기간, <u>장소, 방법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선발기준, <u>인원, 방법</u></p> <p>4. (생 략)</p> <p>제5조(자격제한)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. <u>신체 · 정신상</u>의 사유로 공동 생활이 어려운 학생</p> <p>2. · 3. (생 략)</p> <p>제6조(입사신청) (생 략)</p> <p>1. 성적증명서(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,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)</p> <p>2. ~ 4. (생 략)</p> <p>제7조(선발시기) 향토학사 입사생은 매년 <u>2월초</u>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제8조(선발인원) (생 략)</p>	<p>제3조(입사생 선발공고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신청장소, 신청방법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선발인원, 선발방법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자격제한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법정 전염병(결핵 등)으로 공동 생활이 어려운 학생</p> <p>2. 정신상 등-----</p> <p>---</p> <p>3. ·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제6조(입사신청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(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선발시기) -----</p> <p>----- 2월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8조(선발인원) (현행과 같음)</p>

1.·2. (생략)

<신설>

3.·4. (생략)

제9조(선발및심의) ① (생략)

② (생략)

1. 국가유공자, 국민생활수급대상자, 장애인의 본인 또는 자녀:성적의 20퍼센트

2. (생략)

③ (생략)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입사생 선발 시, 신입생 및 재학생의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4.·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제9조(선발및심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1. -----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-----  
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